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합72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이동훈

변론 종결2023. 1. 13.

판결 선고2023. 2.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1. 9. 14. 접수 제881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8.부터 2020. 4. 23.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다음의 각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017. 6. 28.	90,000,000원	2018. 6. 27.(이후 2022. 6. 24.로 변경)	일반자금대출	C은행
2017. 7. 3.	108,000,000원	2022. 7. 1.	일반자금대출	C은행
2018. 4. 27.	494,000,000원	2019. 4. 26.(이후 2022. 4. 22.로 변경)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D은행
2019. 4. 18.	95,000,000원	2024. 4. 17.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2019. 4. 18.	475,000,000원	2020. 4. 17.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2020. 4. 23.	270,000,000원	2021. 4. 22.(이후 2022. 4. 22.로 변경)	기업일반운전자금	D은행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원고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돈에 대하여 사전상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 비용, 미납한 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위 표 기재 각 은행에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각 1억 원, 1억 2,000만 원, D은행으로부터 각 5억 2,000만 원, 3억 원,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1억 원, 5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이후 보증기간에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4. 6. C은행에 107,401,342원, 같은 달 18일 D은행에 774,145,938원, 같은 달 22일 기업은행에 536,603,73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E은 2021. 9. 6. 소외 회사의 사업장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34,059,174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카단646)을 받고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는 2021. 9.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처분 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G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유일하고 그 가액은 4,175,116,500원(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이다)인 반면, 소극재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3,295,000,000원,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12,138,373원,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820,000,000원,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7,500,000원,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34,059,174원으로 합계 5,678,697,54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 11, 12부터 1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21. 9. 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상 사전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를 해오다가 미지급금이 증가하여 판매를 중단하자, 소외 회사가 2021. 9. 14.경 공장 가동을 계속해야 한다며 기존 미지급금 및 장래 발생할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계속 공급한 것이고,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처분행위로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3) 돌이켜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소외 회사에게 3,851,090,199원(=410,725,150원 +283,975,175원 + 59,038,650원 +341,155,045원 +282,116,395원 +450,799,107원 + 429,069,190원 +462,460,999원 +617,520,783원 +514,229,7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약 15억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게 757,928,105원(=488,490,310원 + 269,437,79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한홍

판사정재우

판사노재승

별지